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및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6. 10. 20(목)
- 시 간 : 17:00 ~ 19:00
- 장 소 : 홍성군 ICOOP센터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및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개최 계획

■ 목적

✓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회부여
- 갈등관리 및 효과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한 공공갈등 분석
- 충청남도의 갈등 유형·상황의 문제를 상정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 적용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 지속가능발전 교육

- 충남의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도민을 대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실시
- 민관 협력을 통한 지방의제 수립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등의 계기 마련을 위해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진행

■ 내용

- 갈등 조정 전문가 특강(충청남도 갈등유형 분석)
-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 진행
- 지역 현안 중심의 토론 진행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0. 20.(목), 17:00 ~ 19:00
- 장 소 : 홍성군 ICOOP 센터
- 참 석 : 약 30명(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주민 등)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7:00	◦ 워크숍 접수	
17:00~17:40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발전방안	장 창 석 (충남연구원)
17:40~18:00	◦ 질의응답 및 토론	
18:00~18:4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	오 수 길 (고려사이버대학교)
18:40~19:00	◦ 질의 응답 및 토론	
19:00~	◦ 폐 회	

■ 발표자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1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발표
2	고려 사이버 대학교	오수길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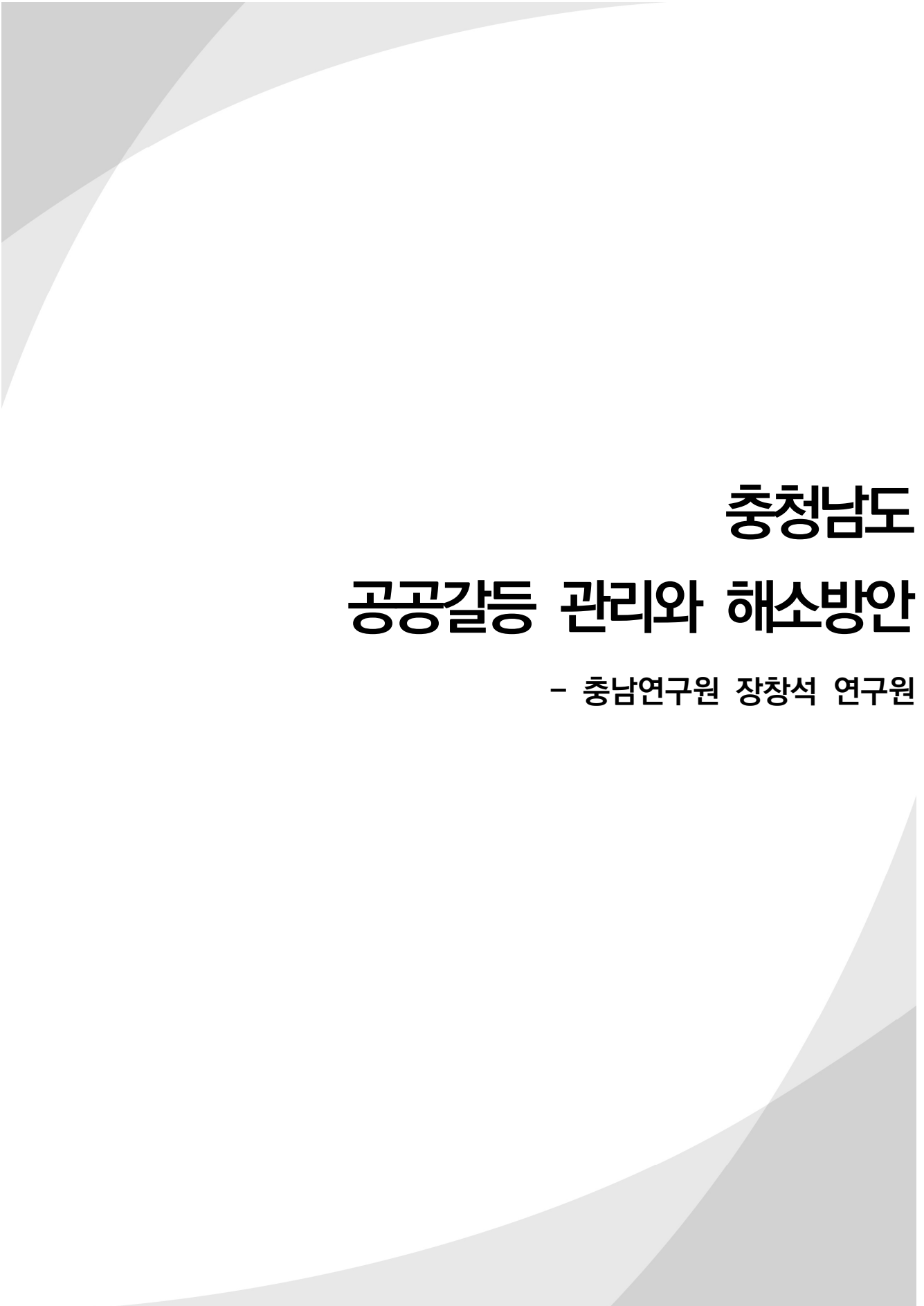
I.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해소방안 1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

II. 유엔 SDGS와 지속가능발전회의의 역할 21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부록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59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와 해소방안

-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2016. 10. 20.
충남연구원
장창석



목차

1. 갈등이란?
2. 갈등관리 현황
3. 충청남도 사례분석
4. 향후과제 및 기대효과

갈등이란?

1. 갈등의 개념 및 유형
2. 공공갈등
3. 갈등관리와 갈등해결방식
4. 합리적 갈등관리방식

갈등의 개념 및 유형



갈등

- ✓ 첩(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의미의 葛藤
- ✓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나, 인간 내면의 상충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심리적 상태

갈등의 유형

- ✓ 원천에 따른 유형
- 목표갈등, 정서갈등, 역할갈등
- ✓ 주체에 따른 유형
- 개인갈등, 집단갈등, 사회갈등
- ✓ 행태에 따른 유형
-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공공갈등이란

-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public dispute)이라 함

갈등발생 주요원인

-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핼피(PI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 ✓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5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및 관리의 필요성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 ✓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갈등 확산
- 경제개발 속에서 이념이나 노동문제 등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
-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 간 갈등 증가
-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입지, 기업유치,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 갈등
- ✓ 2000년대부터는 갈등의 대상이 확대 및 다양화
-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보다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갈등이 확산·증가

관리의 필요성

-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요구
-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 갈등 사안의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6

갈등관리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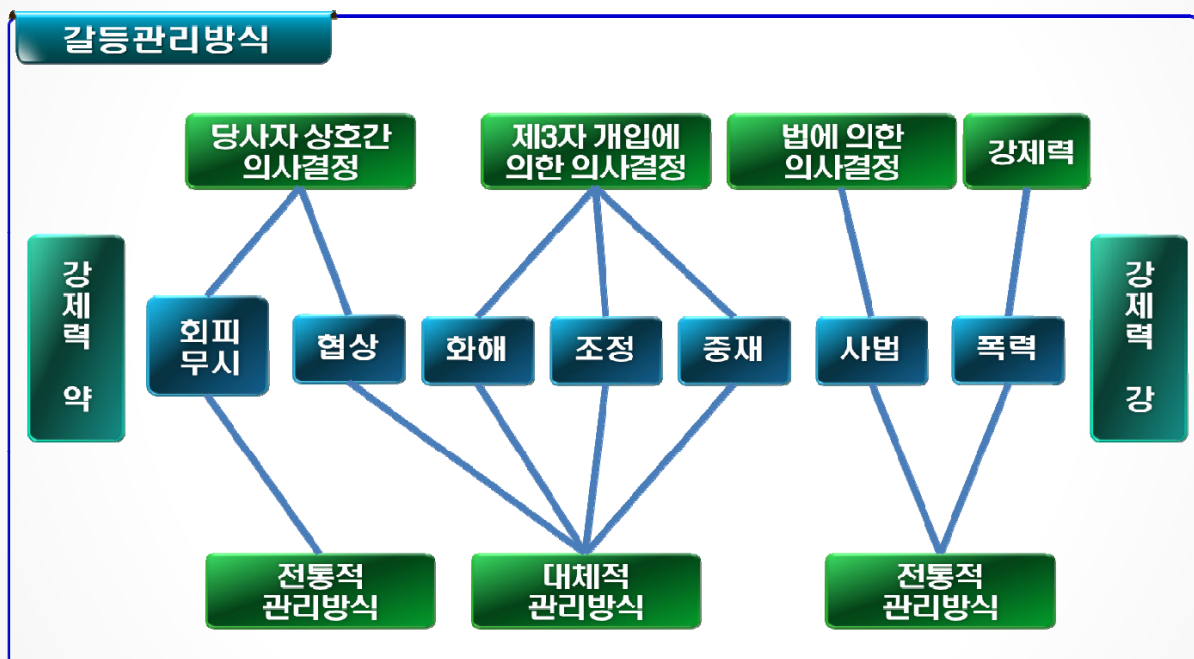
- ✓ 갈등관리는 조직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임
- ✓ 갈등관리는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갈등을 용인 및 허용하는 것, 그에 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나아가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 까지 포괄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

갈등관리방식

- ✓ 독자적 해결 방식
 -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갈등당사자 일방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 ✓ 사법적 해결 방식
 - 재판과 같은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
- ✓ 대체적 해결 방식
 -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7



8



협상 (Negotiation)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화해 (Conciliation)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조정 (Mediation) 중립적 위치의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쉽게 협상·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재 (Arbitration) 사인간 분쟁해결을 사인인 제3자에 의뢰, 다만 당사자간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

갈등관리 현황

1. 국내 갈등관리 추세
2.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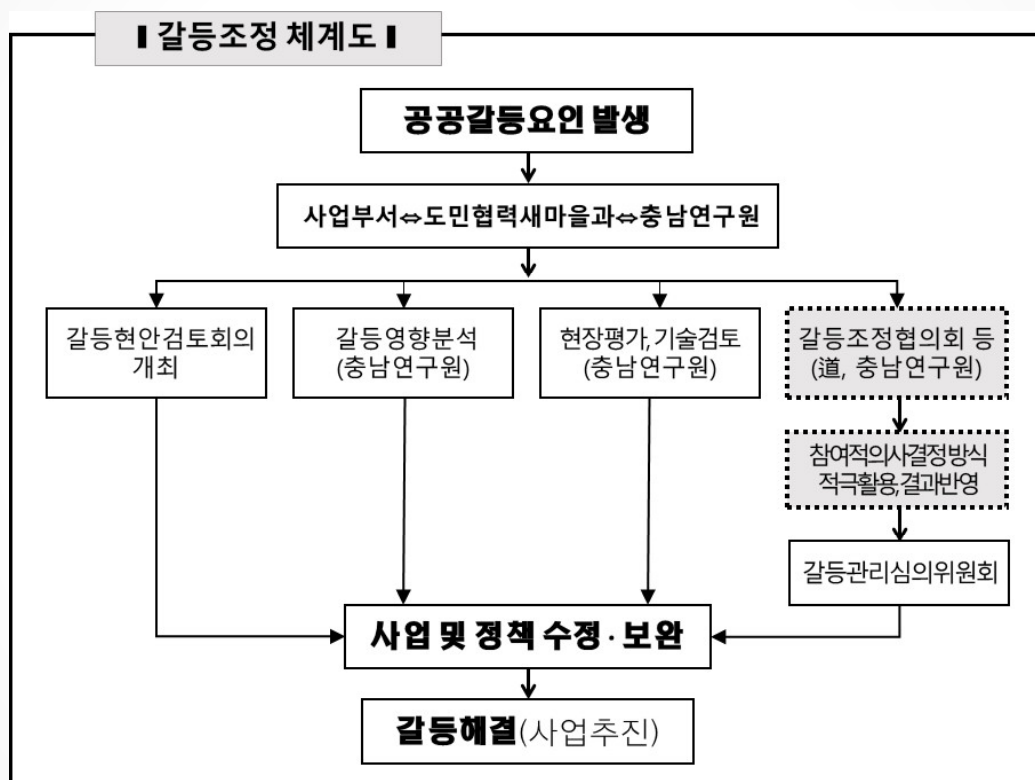
국내 갈등관리 추세

-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 정책의 입안부터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 도모
- ✓ 2007.11.23. 충청북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 충청북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각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
-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 現 2개 팀 9명으로 구성, 2014년 예산액 6개 사업에 261백만원
- ✓ 2015년부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인천시 민원소통담당관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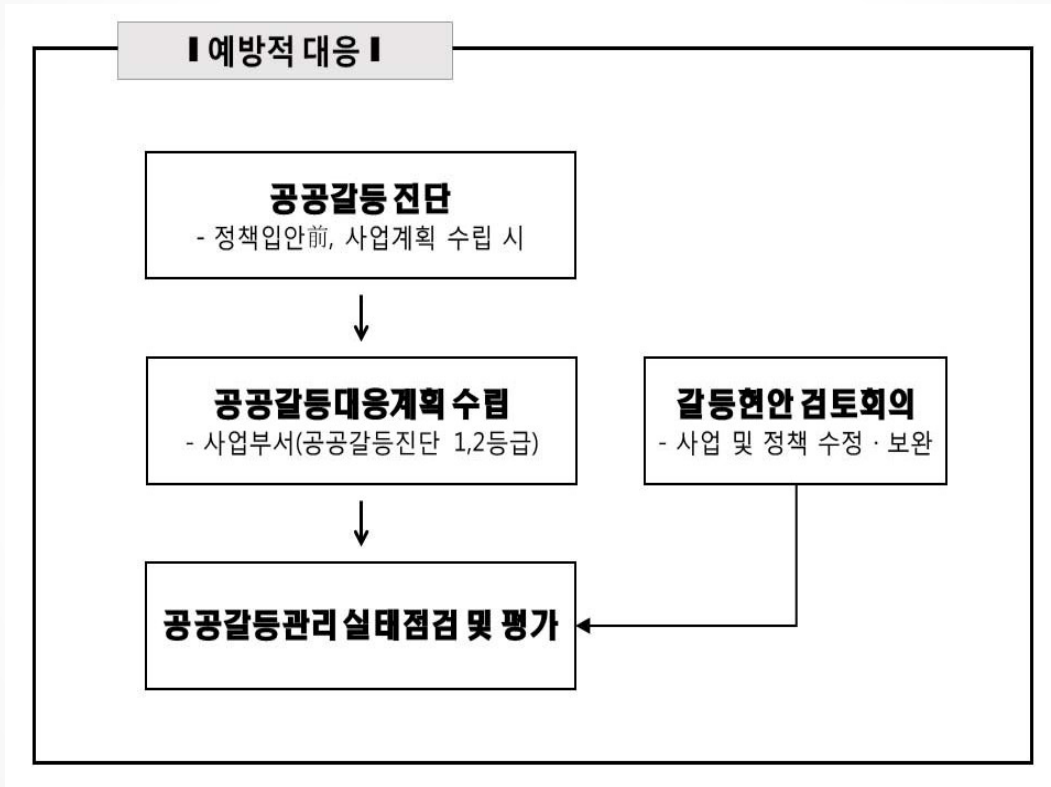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 ✓ 2006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
 -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 포럼 운영
- ✓ 2010. 11. 갈등관리조례를 제정·공포
-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갈등관리담당관 토론회 등을 통한 도-시·군 간 네트워크 형성
 - 2014. 12월 갈등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 ✓ 2015년 1월 갈등관리팀을 신설
- ✓ 2016년 5월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 → 충남연구원(공공갈등연구팀)

11



12



13

충청남도 사례분석

1.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갈등개요

- ✓ 위치: 보령시 신항동 산 253-1
- ✓ 소속: 공군방공포사령부(평택소재)
- ✓ 주요인력: 96명
- ✓ 주사격종목: 대공포, 연1회 미사일사격
- ✓ 운영기간: 150일/년
- 해수욕장 개장(7-8월), 동절기(12-2), 휴일75일 제외

주요진행경과

- '08. 6: 지역주민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문제 공식 제기
- '09. 4-9: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 '10. 6: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보도
- '10. 6-9: 주민건강영향조사(보령시, 호서대)
- '11. 6: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요구
- '11. 6-12: 갯배마을 환경영향조사(환경부)
패류(굴) 카드뮴 기준초과, 화학성분 검출(RDX)
- '12. 8: 국회방문 및 사격장 이전 등 건의
- '12. 9-12: 맹꽁이서식지 조사완료, 해양오염영향조사(공군)
- '12. 11: 보령 공군사격장 민원지역 주민설명회(환경부)
- '13. 3: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대책회의(충청남도)
- '13. 6: 사격장 주변 수산물 안정성 검사(해양수산부)
- '13. 1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주민간담회(충청남도)
- '14: 선행연구 분석 및 관계기관 워크숍 (충청남도,충발연)
- '15. 3: 민관협의체(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16. 7: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사전연구용역 착수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보령 공군사격장 운용과 관련하여, 사격시 발생되는 소음 및 탄피의 해양퇴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건강악화로 주변지역 주민들 민원제기

02 성격(특성)

- 보령시 갯배마을 인근 공군사격장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임
- 비선호시설(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

15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쟁점

- ✓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8군 사격장을 시작으로 1981. 7 한국육군으로 이관, 1991. 7 부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사격장으로 운영중임
 - 사격훈련은 모형비행기를 띄워 해상에서 타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탄두·탄파·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해 해양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 ✓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부대이전
 - 지역주민들은 약 50년간 운영된 사격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 또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주장함

국방부

환경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주민



16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이해관계자

- ✓ **국방부**
 - 보령 공군사격장 이전 계획 없음
 - 2009년부터 3년마다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환경 영향조사
 - 매년 軍 차체에서 탄두수거(사업비 2억) / ※ 폭발위험성 등으로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
- ✓ **환경부**
 - 사격장 주변지역 암 발생 역학조사 관련, 내부적으로 암 발생 현황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진행 중
- ✓ **충청남도·보령시**
 - 공군사격장은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시설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운영중임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 추진 중
- ✓ **지역주민**
 - 보령 공군사격장은 연 150일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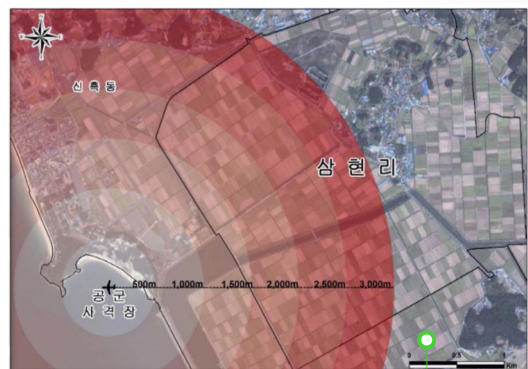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협의체 구성

- ✓ **목적**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및 지역민의 환경피해관련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해결 도모
- ✓ **명칭**: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 ✓ **위원**: 16명(공동대표4인, 위원 12인)
- 충남도 4인, 보령시 4인, 지역주민 4인, 전문가·단체 4인
* 설치근거: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호
- ✓ **기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등
- ✓ **기간**: 2년(2015. 3 ~ 2017. 3)
- ✓ **운영**: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
*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따라 운영

주민주장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지역 현황도



현황도



충청남도 사례분석

2.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갈등개요

- ✓ 사업명 :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전북 익산시
- ✓ 사업규모 : 138.3km(왕복4~6차로)
- ✓ 총사업비 : 27,238억원(보상비 포함)

주요진행경과

- '14. 02. 2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 → 국토부)
- '14. 03. 28 :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의견 제출
- '14. 04. 09 : 국토교통부 예산군 방문 의견 전달
- '14. 07. 1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 '14. 07. 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7.24~8.21)
- '14. 08.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광시면사무소)
- '14. 08.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의견서 제출
- '14. 09. 30 : 읍·면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4. 10. 17 :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촉구에 관한 건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위 → 국토부, 충청도, 예산)
- '14. 11. 13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 '15. 01. 19 : 주민설명회(포스코, 예산문화원)
- '15. 02~03 : 제3차 제안공고에 의한 의견회신 및 제안서제출
- '15. 05. 0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 → 포스코)
- '15. 05. 13 : 대책회의 (주민, 국토부, 포스코, 충남도, 예산)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고속도로 노선중 예산군 통과노선이 대흥면 슬로 시티 인근지역을 지나면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파괴, 환경훼손을 이유로 집단민원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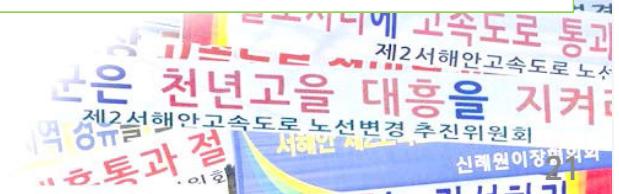
02 성격(특성)

-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선정으로 인한 갈등임
-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쟁점

- ✓ 고속도로 건설
- ✓ 고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노선 중 예산군 대흥면을 통과하는 약 30km의 구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중임
 - 대흥면을 통과하는 노선은 주민거주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주민의 정주권·재산권 피해와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및 자연환경(임존성,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산대흥슬로시티, 황새마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임
 - 또한 대흥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여섯번째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고속도로의 건설은 슬로시티 지속과 운영에 방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임
- ✓ 스마트 IC 건설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대흥면 통과구간에는 IC와 쇼핑몰이 복합된 스마트 IC가 건설 예정임
 - 휴게소와 복합된 스마트IC가 건설될 경우 인근 지역과 원도심 상권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또한 고속도로 노선이 예당호가 조망되는 곳에 스마트 휴게소 건설을 위하여 대흥면을 통과하고 있다는 주장임



|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이해관계자

- ✓ 국토교통부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달성, 수도권과 남부지역간 교통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공사업임
 -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타 공공사업 사례에서도 갈등으로 인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속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 시행사
 - 최초 제안은 대흥면을 관통하는 노선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우회 노선을 제안하였음
 -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협의가 필요함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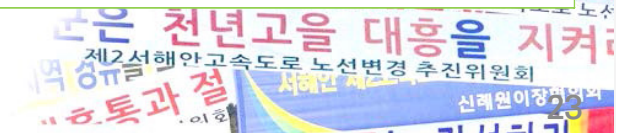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 예산군

- 예산군은 충남서부지역 교통요충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예산군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나, 다수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회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 추후 국토교통부, 포스코와 논의를 통하여 군에 유리한 노선을 확정할 계획임

✓ 지역주민(대흥면)

- 대흥면은 예당호, 임존성, 대흥동헌과 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가로지는 기존 노선(안)은 문화재 및 환경, 자연경관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 또한 대흥면을 경유하는 노선은 시행사가 예당호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로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봉수산 동쪽으로 우회할 것을 요구함
- 대흥면 지역은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 시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시 기존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함께 2개의 고속도로가 위치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짐
-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만 남겨지게 되며, 지역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임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협의체 구성

- ✓ 명칭: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 ✓ 위원: 15명(위원장 1인, 위원 14인)
 - 지역주민 3인, 시행사 2인, 전문가 5인
 - 공무원 5인(국토부 1인, 충남도 2인, 예산군 2인)
- ✓ 기능: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등 고속도로 건설 협의·조정
- ✓ 기간: 2015. 9. 9~갈등 해결 시 까지
- ✓ 운영: 고속도로 노선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협의



충청남도 사례분석

3.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

갈등개요

- ✓ 사업명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 ✓ 사업위치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부지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 ✓ 시설규모 : 374.1Gcal/h(최대열부하량), 97MW(전기)
- ✓ 시설내역 : 열병합발전시설 (SRF 2기, LNG 1기), 열전용 보일러 (LNG 4기)

주요진행경과

- '08. 5 :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 개발면적 60만㎡ 이상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의무시설)
- '09. 2 : 지역난방공급지역 지정, 고시
- '10. 1 : 집단에너지 사업추진 협약식 체결
- '10. 8 : 집단에너지 허가(지경부→롯데건설)
- '11. 8 : 내포신도시 열배관 공사 착공(초기생활권 지역)
- '12. 2 : 중부발전 사업 참여 포기(환경부 정책변화로 RDF 사용 무산)
- '12. 5 : 집단에너지사업 고형연료 변경 검토 요청(롯데건설)
- '12. 8 : 임시보일러(4) 설치 완료 및 열공급(도청사, 롯데아파트)
- '13. 7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신청(롯데건설→산업통상자원부)
- '14. 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2회)
연료변경으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집단에너지시설 반대 민원 발생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은 국비확보를 전제로 광역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환경부의 정책변화로 광역화 사업 추진이 중단됨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단독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며, 사용연료가 RDF→RPF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홍성 예산지역 주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용연료 변경에 따른 환경피해와 주민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함

02 성격(특성)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로 인한 갈등임
-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

쟁점

✓ 광역화 사업 중단

- 2008년 시설 계획시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도시 · 홍성군 · 예산군의 쓰레기 권역별 처리 타당성 검토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 국비지원을 전제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RDF 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의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의 정책변화로 국비지원이 불가피해짐
- 광역화 '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RDF 생산시설 중단에 따른 당초 계획된 사용연료 수급이 불가능 함

✓ 사용연료 변경으로 인한 민원

-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사업 계획 전면 중단으로 계획대로 입주중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열 공급 차질에 따른 대책 강구됨
- 열 공급을 위한 임시보일러가 운영 중이며, 집단에너지 시설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한 상황임
- 광역화 시설에서 내포신도시 단독 시설로 추진 중이며, 집단에너지시설 사용(대체)연료 변경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 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

이해관계자

✓ 충청남도

- 현재 내포신도시는 임대보일러 총 47기(16Gcal/h)가 운영 중이나, 하절기 이후 인구증가와 시설증가로 인해 열수요 증가가 예상됨
- 2016년 하반기 이후 신도시 열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임시보일러 운영한계가 초과되어 열 공급 시설의 설치 및 가동이 시급한 상황임

✓ 홍성군 · 예산군

- 국비확보 실패로 道, 홍성군, 예산군의 자체 예산으로 내포신도시내 광역화 시설의 추진은 어려움
-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 지역 생활폐기물은 아산시에 위탁 처리 중이며, 예산군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예산군 자체 처리중임
- 2021년까지 현재 처리시스템의 어려움은 없으며, 광역화 시설 설치는 기존시설의 사용년한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 추진이 가능함

✓ 지역주민 · 시민단체

-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열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소외감 및 피해의식 등으로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함
- 내포신도시는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맞는 에너지 수급계획이 필요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갈등

협의체 구성

- ✓ 명칭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 ✓ 위원 : 28명(위원장 1인, 위원 27인)
 - 지역주민 12인, 전문가 4인, 환경단체 2인, 사업자 2인, 관계관 5인, 관계기관 3인
- ✓ 기능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운영 및 사용연료 협의·조정
- ✓ 기간 : 2014. 10 ~ 문제 해결 시 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015. 12 ~)
 - 내포그린에너지(주)와 롯데건설(주) 공사계약 체결(16.8.19.)
 - 주민 지원사업 협의 즉시 공사 착수 예정(공사기간 35개월)
- ✓ 운영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의와 조정 분위기 확산, 협의회 운영을 통한 대안마련 추진



향후과제 및 기대 효과

1. 향후과제
2. 기대효과

타협과 조정 필요

- ✓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갈등은 그 성격이 이익갈등인 경우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나, 가치갈등인 경우 사업자체를 문제로 삼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움
- ✓ 현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갖는 문제점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 정주여건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 이러한 우려는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진행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이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합의 형성단계 필요

- ✓ 현재 표출되는 갈등은 관-관, 관-민, 민-민 갈등의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 조급한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미흡, 정보공개 부족, 공공사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인식 불일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이에 이해관계자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합의형성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31

공식적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신 및 대립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의사소통 창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소한 의견대립에도 갈등이 증폭되기 쉬움
- ✓ 이해관계자 면담결과 관련기관·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함
- ✓ 이에 공식적 협의기구인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32

절차적 프레임 구축 및 운영

- ✓ 공공갈등 관리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충돌을 민주성, 자율성 공정성, 공익성이란 원칙 하에서 제도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임
- ✓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합리적으로 조정,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프레임 마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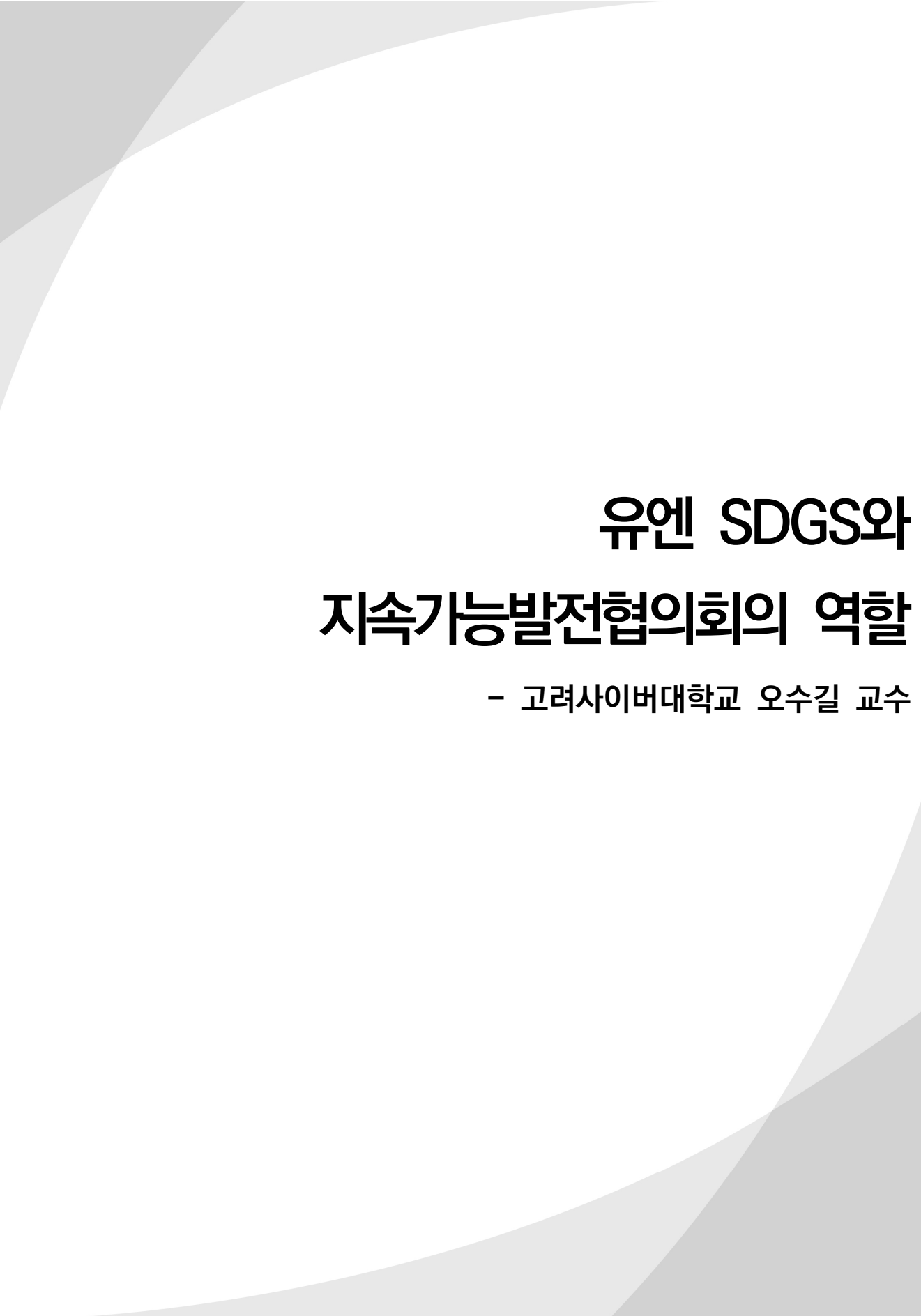
- ✓ 신뢰성 부족은 상호간 협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 ✓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사소통, 절차의 투명성이 요구됨
- ✓ 공공갈등의 경우 법적 소송이나 제도적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 합의나 조정, 중립적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기존 경제적, 제도적 측면의 갈등해결 방안의 방향 전환 필요
- ✓ 이해당사자의 참여확대, 심의의 확대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의 토대 마련

33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 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역할

-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지속가능발전과 갈등관리 워크숍

유엔 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역할

2016. 10. 20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충남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

순 서

1.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발전
3.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
4.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5. 거버넌스 과제



1.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If you are not part
of the solution you are
part of the problem.**

**Miljöforum / Environment Forum
Stockholm, Konstfack 5.6-16.6 1972**

http://brachysclereid.rssing.com/chan-1610545/all_p1.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94%94%EB%9D%BC_%EA%B0%84%EB%94%94

1983



1987



http://en.wikipedia.org/wiki/Gro_Harlem_Brundtland
<http://www.israelwhat.com/2013/11/24/former-pm-brundtland-blames-israel>
http://en.wikipedia.org/wiki/Our_Common_Future
<http://www.ursa.com/en-us/drivingsustainability/pages/global-need-for-sustainable-development.aspx>
<http://group.skanska.com/sustainability/skanska-and-sustainability/international-initiatives/rio20/>

5

우리 공동의 미래(1987) – 브룬트란트 보고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보장 – **정치체제**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 생산 – **경제체제**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 해결 – **사회체제**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 의무 존중 – **생산체제**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 찾기 – **기술체제**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 촉진- **국제체제**

6

지속가능발전 추진 원리 1 - 유연한 행정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

전통적 정책 추진방식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

- 정책분야가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 개별 정책
- 담당부서, 분야가 다르다고 연계성 없는 제로섬 정책을 양산

효과 정책	사회(1)	문화(2)	경제(3)	환경(4)
사회(A)	A1			
문화(B)		B2		
경제(C)			C3	
환경(D)				D4

non zero-sum
정책

zero-sum
정책

낭비 요인
&
가치 충돌

7

지속가능발전 추진 원리 1 - 유연한 행정

총체적인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

현 위기의 진단, 정책전환의 인식확산, 법제도 장치 구축

-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
-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협력적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산출

효과 정책	사회(1)	문화(2)	경제(3)	환경(4)
사회(A)	A1	A2	A3	A4
문화(B)	B1	B2	B3	B4
경제(C)	C1	C2	C3	C4
환경(D)	D1	D2	D3	D4

zero-sum
정책

non zero-sum
정책

정책갈등에서
정책통합으로

8

지속가능발전 추진 원리 2: 행정의 자기교정능력



지속가능발전 추진 원리 2: 행정의 자기교정능력

지방의제21

- 지구차원으로 생각하고 지방차원에서 행동하라
- 의제21 제28장 지방정부의 역할: 파트너십,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

지방의제21의 9개 주요 그룹

-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 여성 활동
- 지속가능발전에서 아동과 청년 활동
- 원주민 및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역할 강화
- 지속가능발전의 동반 협력자로서 NGO의 역할 강화
- 의제21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 기업체 및 산업체의 역할 강화
- 과학기술 분야
- 농민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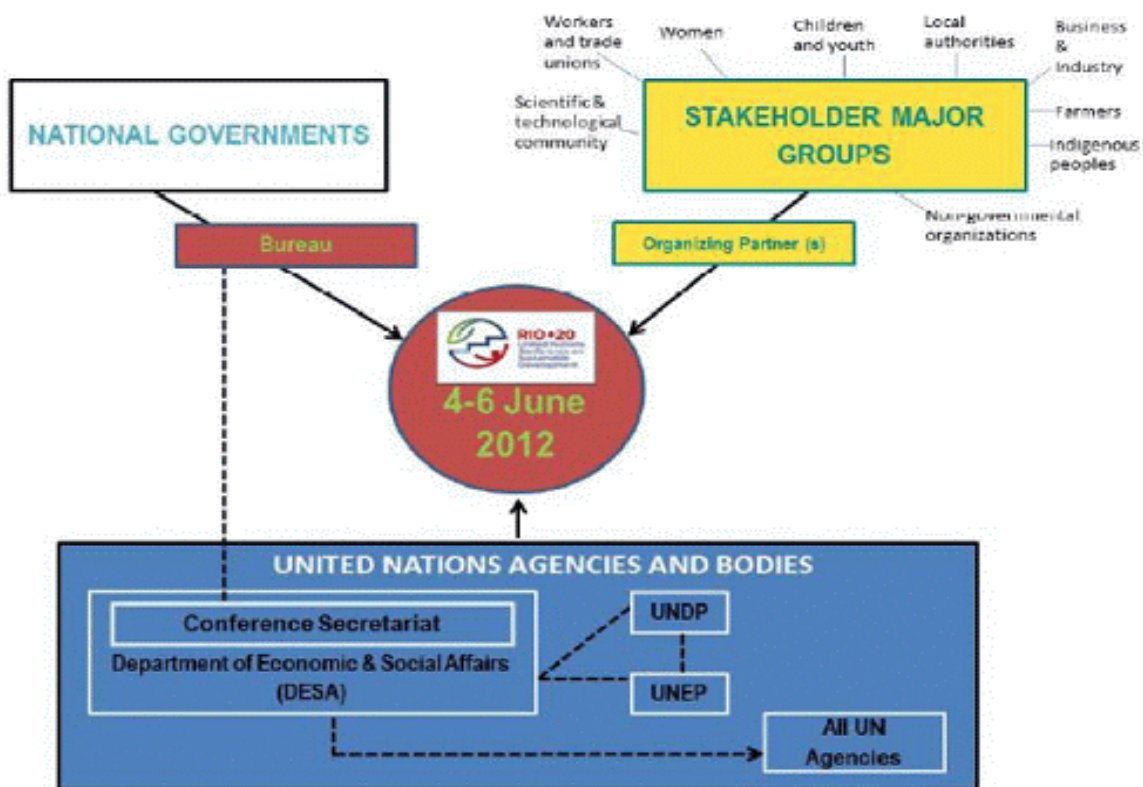
리우+20의 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관여를 새로이 함
- 지금까지의 진척과 주요 회의 결과 이행의 간격을 평가
- 새로이 등장하는 도전들을 다룸

리우+20의 주제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근절이라는 맥락의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11



Rio+20

콘래드 오토짐머만(2011)

12

세계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역사

유형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	특징	주도 조직	한계	과제
지방정부 주도형	지방정부의 전략	비용-효율성 계산과 위기관리	지방정부 리더, 공무원	단기적, 효율 추구, 소통과 참여 부족	참여의 확대, 지속가능성 기준 합의, 제도화
시민사회 주도 및 민관 협력형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이해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정책 대안과 책임의 부재, 협력적 정치 문화의 부족	거버넌스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목표에 대한 책임, 신뢰 증진
지역 조직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형	공동 행동 (협력적 활동)	협동과 협력의 가치 지향	다부문 (지방정부와 다양한 네트워크)적 특성	상이한 조건과 경험, 작용 원리	지속적인 동기 부여, 건설적 조언과 책임성의 제고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 정책	지속가능성 정책과 제도화와 수준 반영	국가	기술혁신과 성장 강조	국가정책의 녹색화, 거버넌스와 리더십 구축
국제 협력형	국제 협력	글로벌 기준과 약속 제시, 경험과 정보의 공유, 자원 지원	국제기구와 국가·지방 수준의 다양한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과정의 획일화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재구성 (창조적 적용)

지방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 / 글로벌포럼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 ◆ Agenda 21 작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 ◆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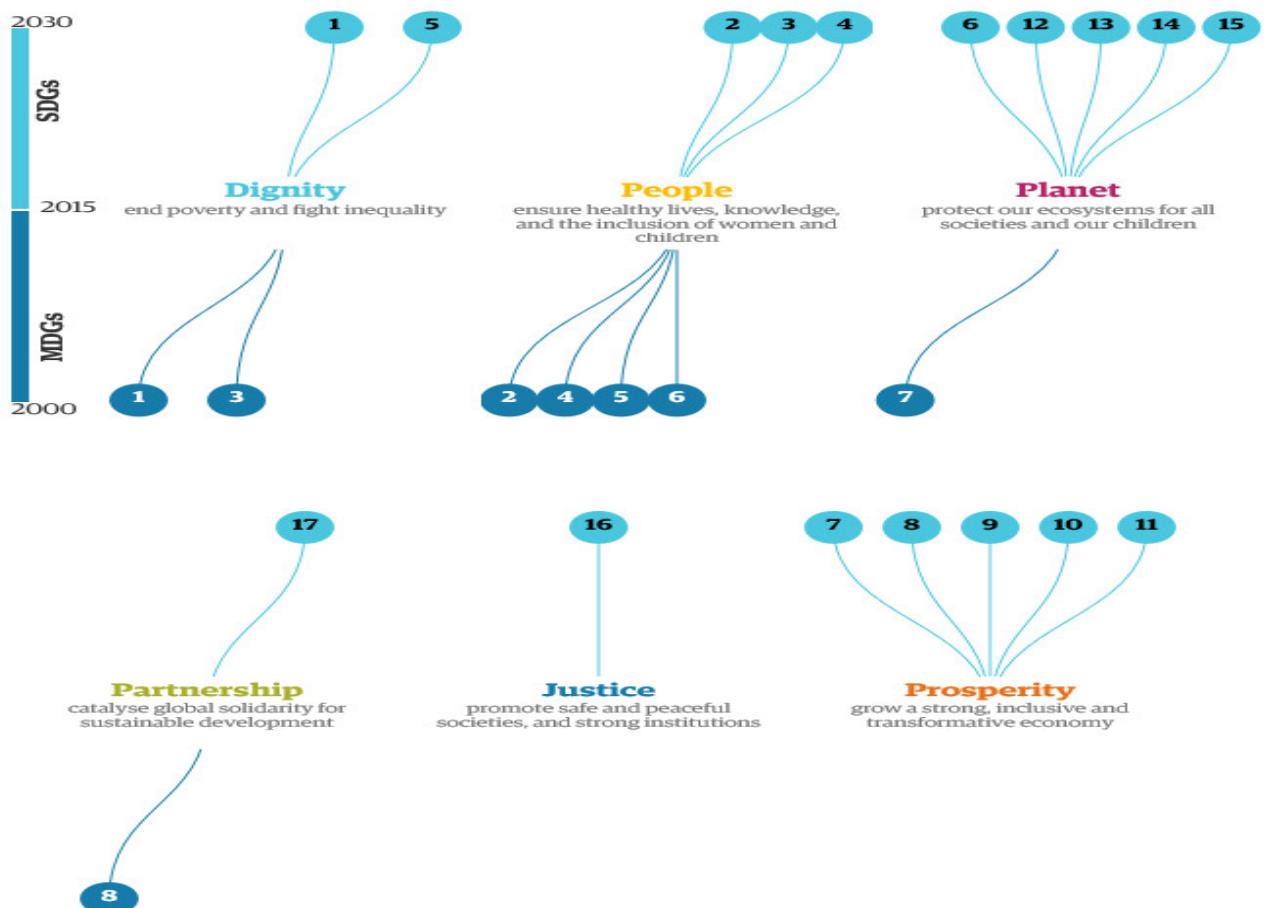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

- ◆ 지방정부가 주요 실천 주체
- ◆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2001-2015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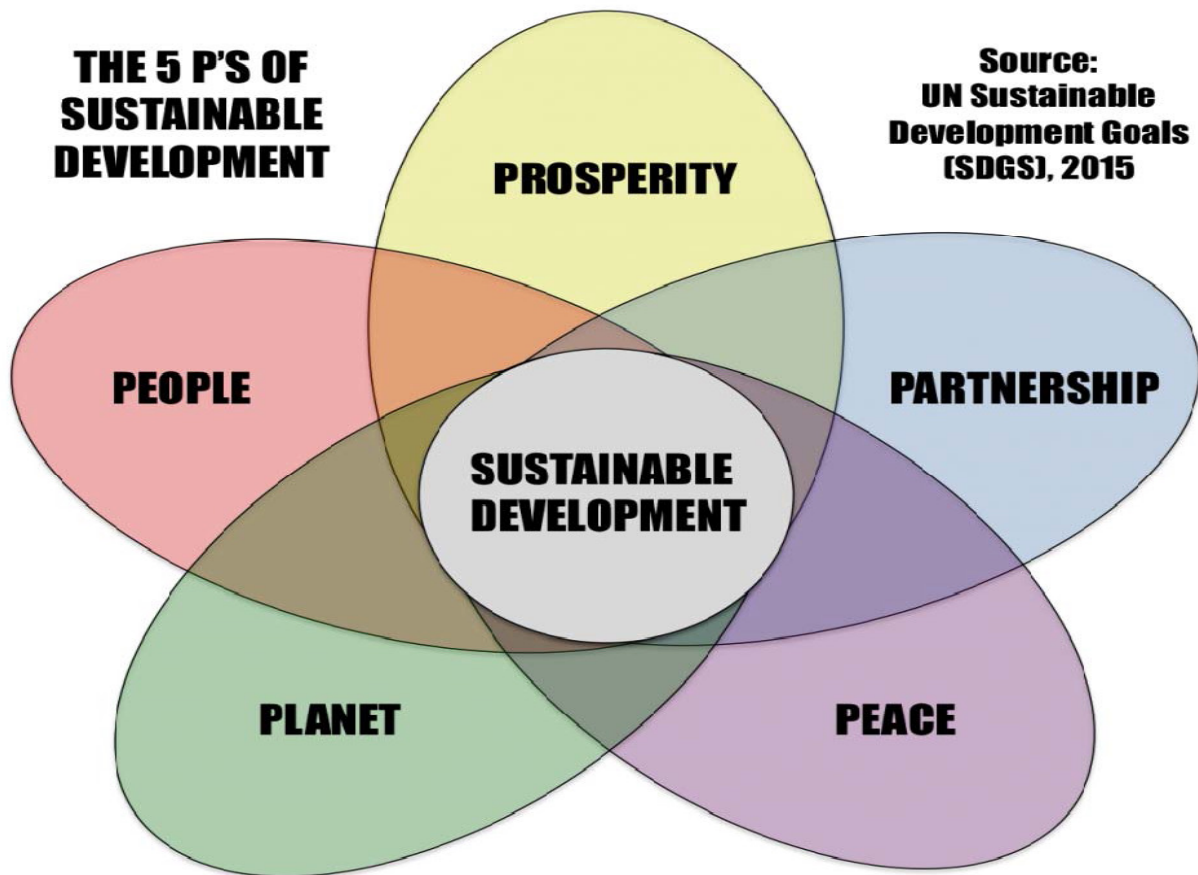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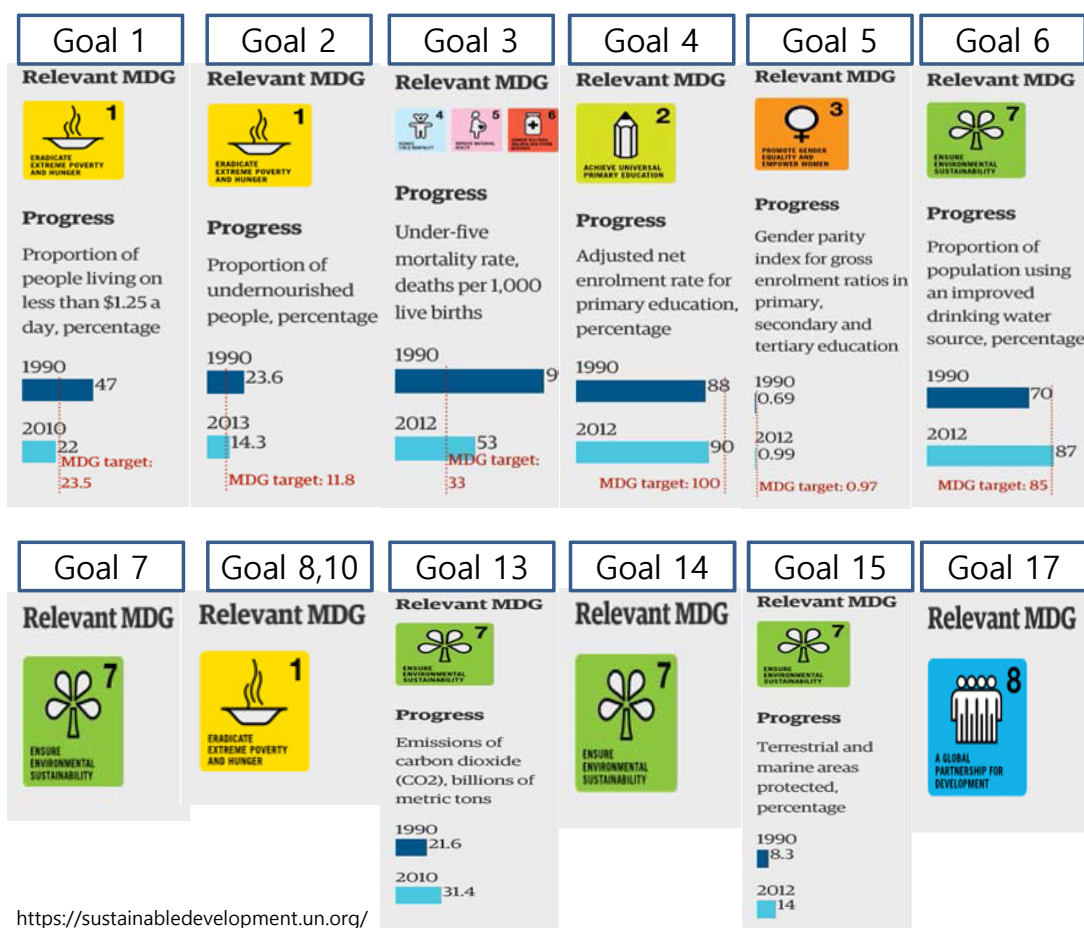
THE 5 P'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urc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5



<http://www.waynevisser.com/report/sdgs-finalised-text>

17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0개 평가지표(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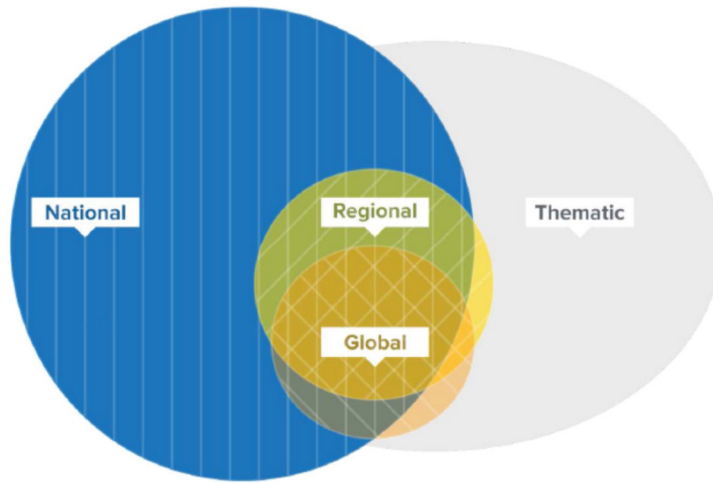


유엔 총회 193개국 합의 채택(2015. 9)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 지표



국가, 지역, 글로벌,
주제별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회 UN SDG 포럼(19-20대 국회)



22개국 시범평가(2016. 7)



한국 국가이행평가보고서 [National Review] (2016.7)

- 보고서 작성 배경, 목적, 방법론 소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SDGs 이전)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경제성장 - 빈곤해소 - 민주주의
 - 92년 리우회의 이후 국가행동계획, 지속가능발전 대통령위원회
-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우호적 환경 조성
 - 국내이행
 -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 국회 유엔 SDGs 포럼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개발협력
 - * 청소년, 안전, 과학기술, 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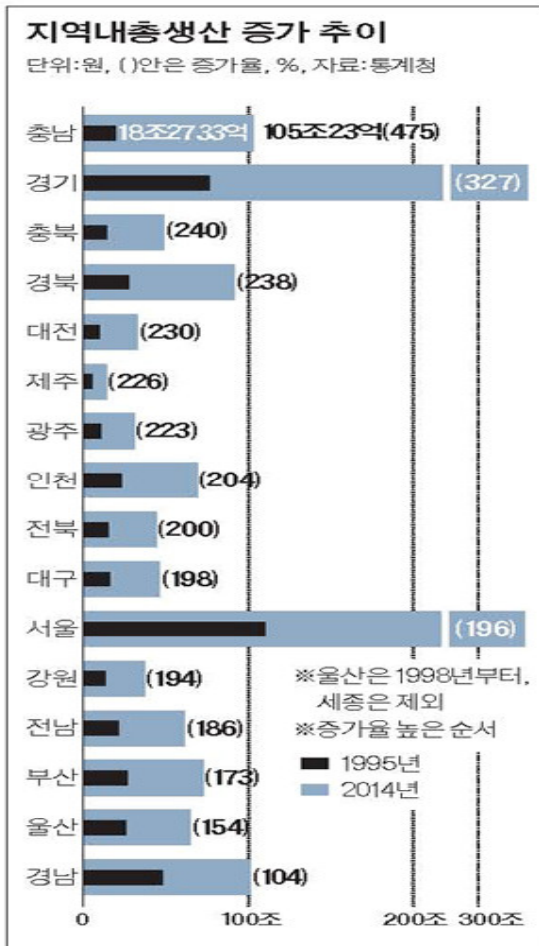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

중앙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 부활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국제회의	WCED(1992)		WSSD(2002)			UNCSD(2012)	
준거틀	리우선언		요하네스버그선언		녹색성장	SDGs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PCCC)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COP 21)				SDG 13
국가	의제21	PCSD		국가체계	녹색성장 기본계획	SDGs 국가이행 시범평가	
성과	지속가능발전 담론 확산			행정혁신	환경산업	유엔과의 연계	
한계	정책에 대한 영향력 부족			중앙차원	사회배제	거버넌스 미흡	

25



2.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발전



Sunday Vol.497
2016.09.18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신문
중앙SUNDAY

본지와
중앙

☰ 중앙SUNDAY ▾ S MAGAZINE ▾ LIBRARY ▾ GALLERY ▾

경제

GRDP, 경남 2배 늘 때 충남 6배 꺾충

지자체 시행 20년, 지역 불균형 성장... 수도권 규제로 인접지역만 혜택

김태윤 기자 | 제 497 호 | 2016.09.18 01:56 입력

<http://sunday.joins.com/archives/135687>

충남지역 소득 26조5천억 역외로 유출 '전국 최대'

2014년 기준...근로자 거주 여건 향상·기업 본사 유치 노력 필요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 경제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3조7천억원으로 경기(329조원)와 서울(328조원)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역총소득은 77조2천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에 이어 전국 5위에 그쳤다.

지방화와 지속가능성

- 비 지역기업과 지속가능성
- 지역기업의 책무(염치와 기부액(2.5배))
- 지역기업 생산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 친환경 소기업 모델과 저가의 식품 유통, 에너지 자립, 기술이전

지방화와 번영

- 지역기업의 부동산성 vs 세액감면 95%, 제품생산 10배-33배
- 지역기업의 경제상승 효과(100달러 중 13달러 vs 45달러)
- 독특한 지역기업의 창조적 경제
- 부문별 네트워크 조직,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 전문가 양성

자료: 월드워치연구소. (2007). <도시의 미래>. 오수길 외 역. 서울: 도요새.

29

이토록 멋진 마을



자료: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6). <이토록 멋진 마을>. 황소자리. p.16

풍요지표(신국민생활지표)

거주한다.
일한다.
치유한다.
논다.
소비한다.
기른다.
공부한다.
교류한다.

8개 분야 159개 항목

보육원 수용율 1위
초·중학교 학력평가 및 체력평가 1위
대졸 취업률 1위
정규직 비율 1위
사장 배출률 1위
1인당 소득 1위

31

“일본에서 가장 빨리 중국에 당한 곳입니다.”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http://m.blog.daum.net/oneshot1022/1082>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6). <이토록 멋진 마을>. 황소자리. P15, 19

기관명	본부	회원	설립	주요 영역
C40도시	뉴욕	63개 도시	2005	기후, 에너지효율
이동성을 위한 도시	슈트트가르트	76개국550회원	2003	교통
시티프로토콜	바르셀로나	41개 도시	2012	기술,기업, 지속가능성
시티넷	서울	77개 도시	1987	네트워킹,모범사례
국제관계를 위한 지역당국위원회	도쿄	7개900명	1988	국제협력,재건
Climate Alliance	프랑크푸르트	유럽18개국1600개	1990	기후, 에너지효율
DELGOSEA	마닐라	4개 국가도시	2010	민주주의
ICLEI	본	1227개	1990	기후, 에너지효율
국제시군관리연합	워싱턴DC	9000명	1914	좋은정보, 교육
국제도시개발연합	파리	3000회원	1979	네트워킹, 지식교환
역사도시연맹	교토	92개 도시	1994	예술과 문화
평화를 위한 시장	히로시마	152개국5092개 도시	1982	평화, 인권
주요대도시세계연합	바르셀로나	100개 도시	1985	네트워킹, 환경
세계유적도시기구	퀘벡	238개 도시	1993	예술과 문화
국제자매도시	워싱턴DC	136개국2000개	1956	문화교류, 자매도시
대중교통국제연합	브뤼셀	92개국3400회원	1885	대중교통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바르셀로나	1000개 도시(+112개국)	2004	네트워킹 33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1. 유엔 SDGs 내 도시 목표의 수립과 지속가능성 평가
2. 지역 기후행동의 확대, 실천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계획과 실천
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 성과의 10% 향상

35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현황

	가치의 전면화	조례	협의회	전담 행정조직	전략 및 이행계획
대부분	△	설치 및 운영조례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 기획과(시흥시)	의제21
인천 부평구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전기획단	○
광주광역시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정책과	○
서울시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	평가담당관실/ 환경정책과	○ (기본계획)
서울 도봉구	○	○	○	지속가능발전팀	
인천 남구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속가능발전국	남구형 SDGs
충청남도	△	△ (기본조례)	정책자문위 특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	
서울 강동구	△	설치 및 운영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경영과	

36



3.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Cornerstones of Transforming the Urban World towards Sustainability



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정합성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가평 취약계층 단열재설치사업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전주 해피버스365 대전 시내버스모니터단 광명 보행지도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인천남구 우각로문화마을

39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원주 한도시 한책읽기 전남 방과후 환경교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줄인다.	부천 도시재생시나리오 안산 재난극복의 희망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인다.	순천 쓰레기 자원화 강릉 자원순환도시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천안 무장애도시

40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경기 도시대학 광주 앞산뒤산네트워크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시흥 시민햇빛발전소 대구 차없는거리 생명 축제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41

세계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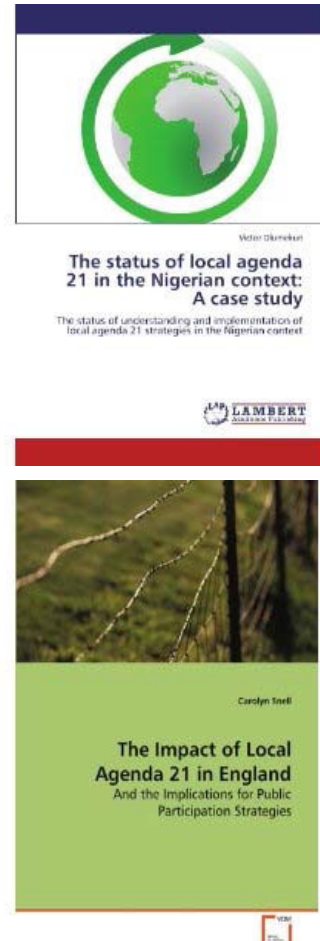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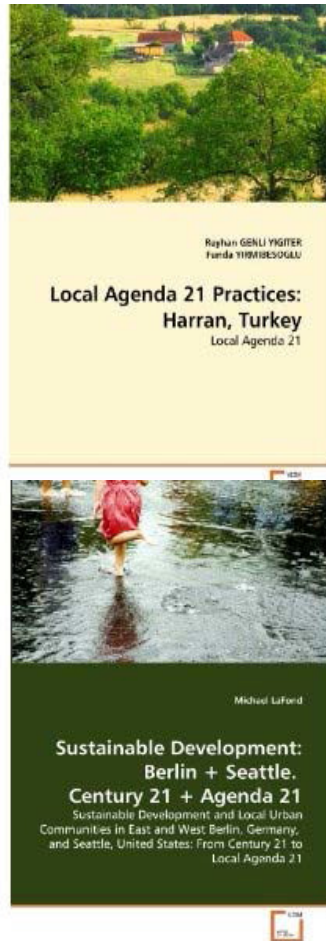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1995년 부산에서 지방의제21이 처음으로 추진된 이래 오늘날 지방정부의 86%가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600개의 ICLEI 회원도시가 지속가능성을 지방의제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대도시의 80%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위 5개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스페인은 지역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덕택에 스페인 지자체 중 약 절반을 포함하여 3,763개의 적극적인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제21 운동이 1990년대 말에야 시작된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약 850개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의 70%를 포괄하고 있고, 지역과 현의 절반이상에 해당한다.

42



43

지방의제21에서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으로

-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거버넌스로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을 교육하고 끌어 모으며 반응하는 데 생생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의제21 제 28장(1992)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계획의 준비와 이행을 바탕으로 지방수준에서 의제2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적이고 다부문적인 과정” - ICLEI(1997)
-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성과 지방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 - ICLEI(2012)

44



4.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여러분 모두 이 표처럼 만들어서 우리 세계의 지속가능성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도를 측정해 보십시오.”

일련 번호	프로젝트 명	핵심성과 지표	측정 (2015년말)	성과	목표 공식	목표	측정 빈도	SDGs 세부 목표	SDGs 목표
1	가정내 재활용 (종이, 플라스틱)	재 활 용 률	110.5개 쓰레기봉투 중 재활용 37.5	34%	전년 대비 10% 향상	41% 재활용	매월	12.5 (쓰레기 감소)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2									

- Malek Ghazo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역할

지속가능발전 지표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시

경제분과

	지표명	2012년	2013년	향상정도	참고
1	전주비빔밥 판매그릇 수	636,661 (10개 업소)	717,134 (10개 업소)	😊	
2	한옥마을 숙박자 수	83,524명 (외국인 5,647명)	138,539명 (외국인 8,114명)	😊	
3	영화 촬영의 수, 체류 촬영일 수	39편, 662일	27편, 404일	😞	
4	동네마트 판매금액	24,100백만원	25,988백만원	😊	
5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 (외식 및 이·미용 등)	5.8%상승 (2011년대비)	5.2%상승 (2012년대비)	😐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6	고용률	54.4%	54.7%	😐	

47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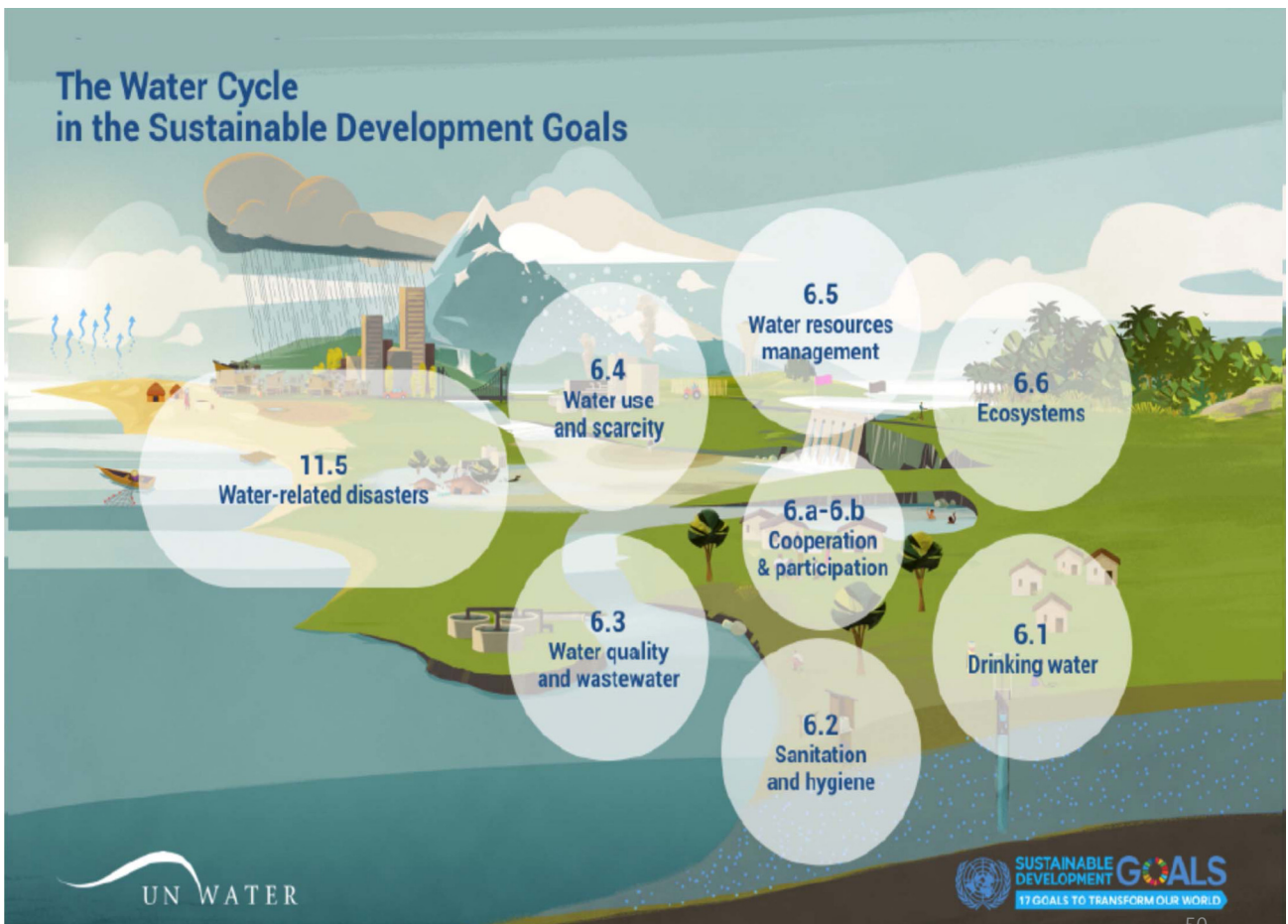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나침반
- 행정의 혁신 및 관리 수단
- 수평적 소통을 통한 융복합 행정 촉진 수단
- 외부와의 소통 수단
-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수단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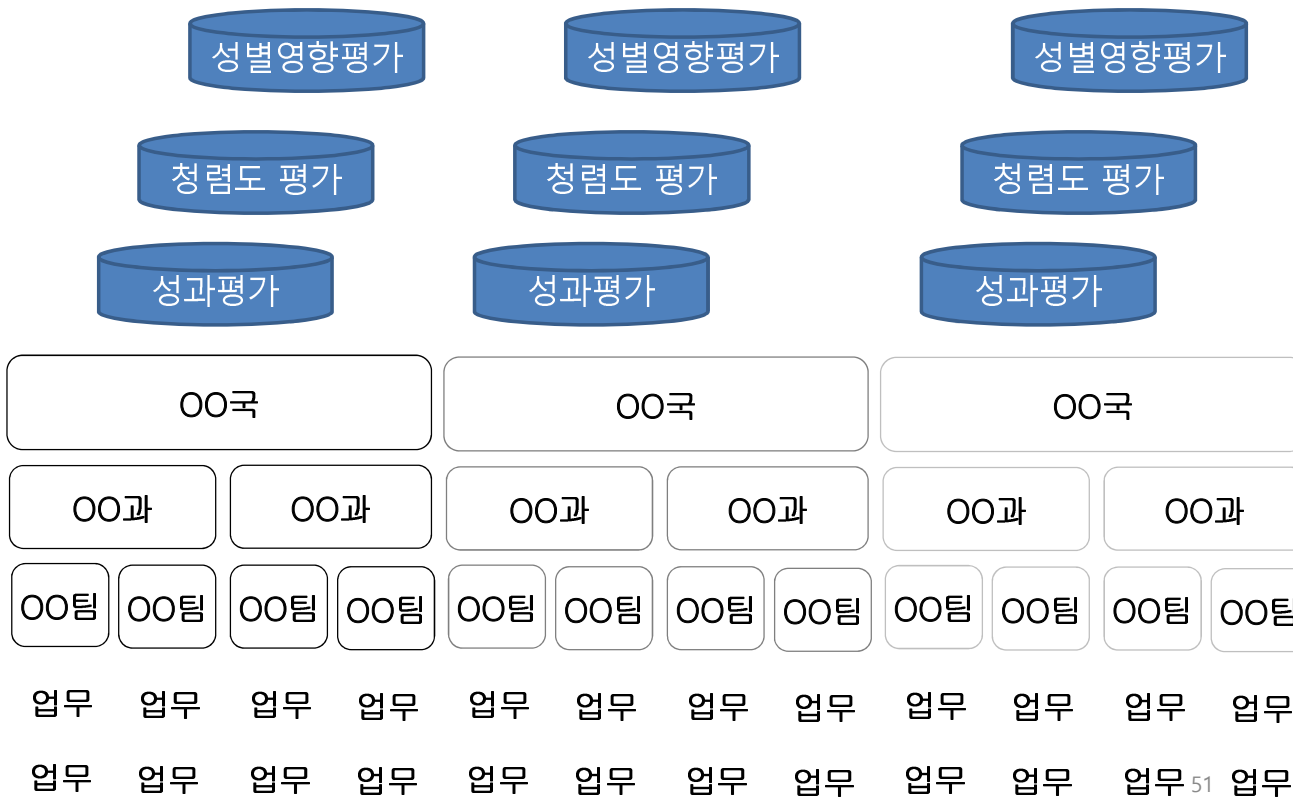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개념

- 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지역사회발전계획
- 지자체 전체의 공간영역을 통괄하는 계획분야 간 조화 및 연계정책
- 도시정책 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중점
- 개별계획의 사업내용이 특정분야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지역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합의를 통한 도시정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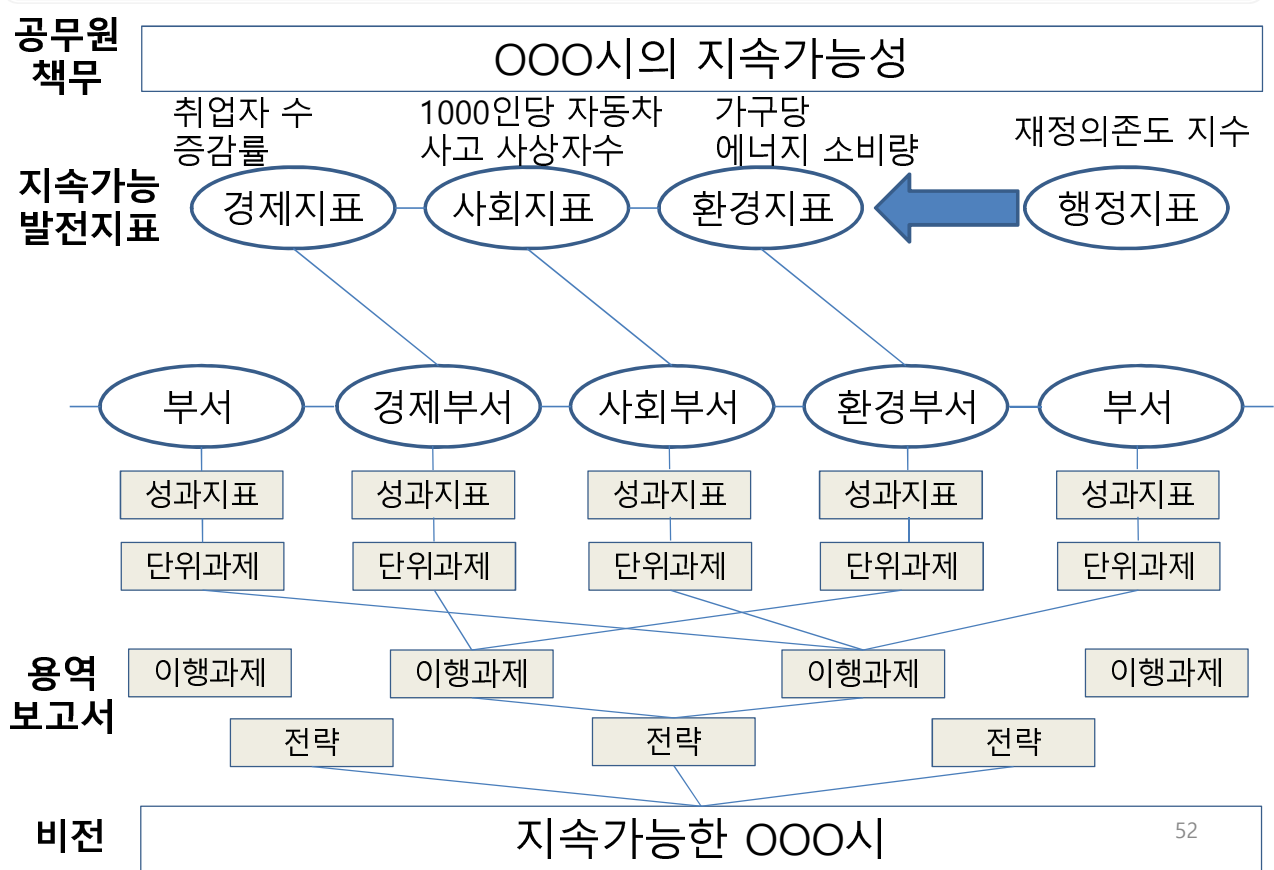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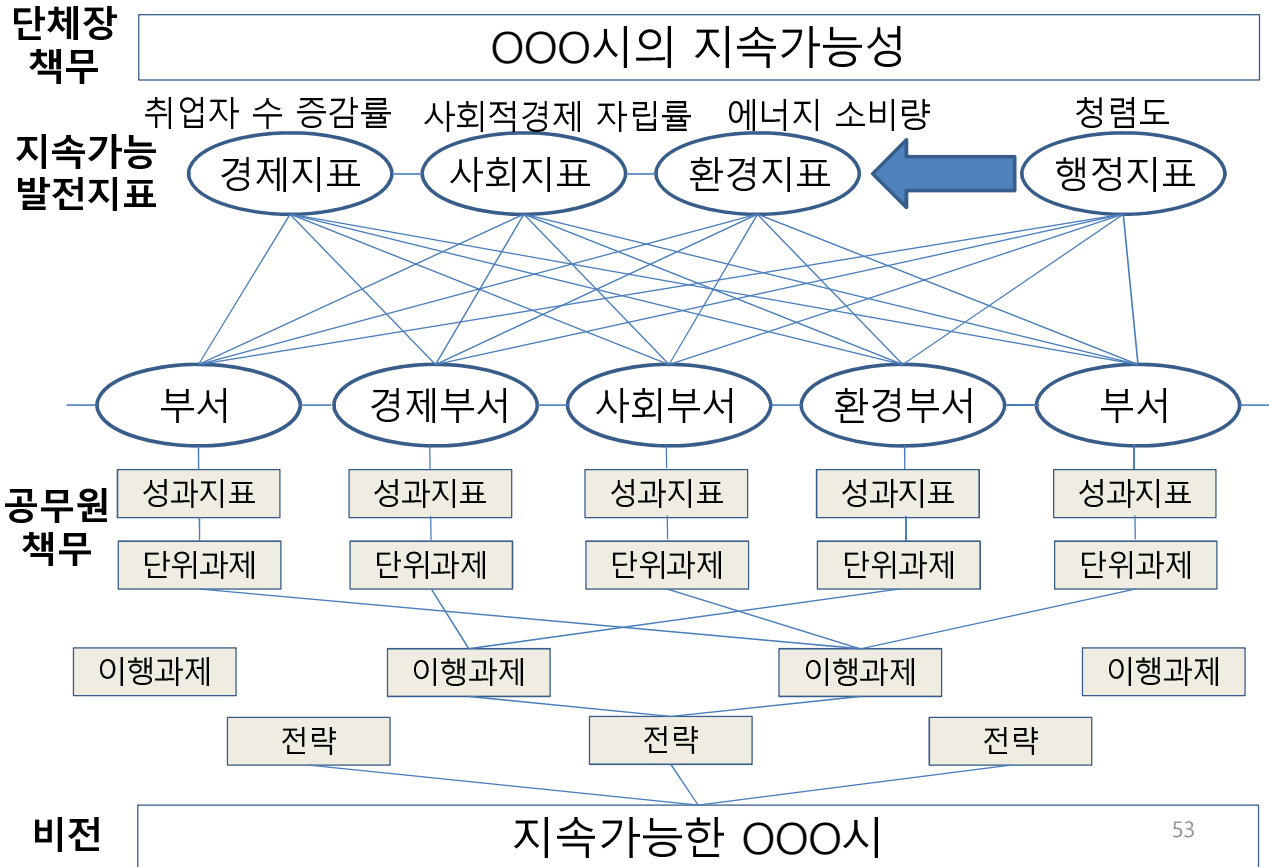
또 다른 평가의 추가?



OOO시 지속가능발전 행정 추진체계(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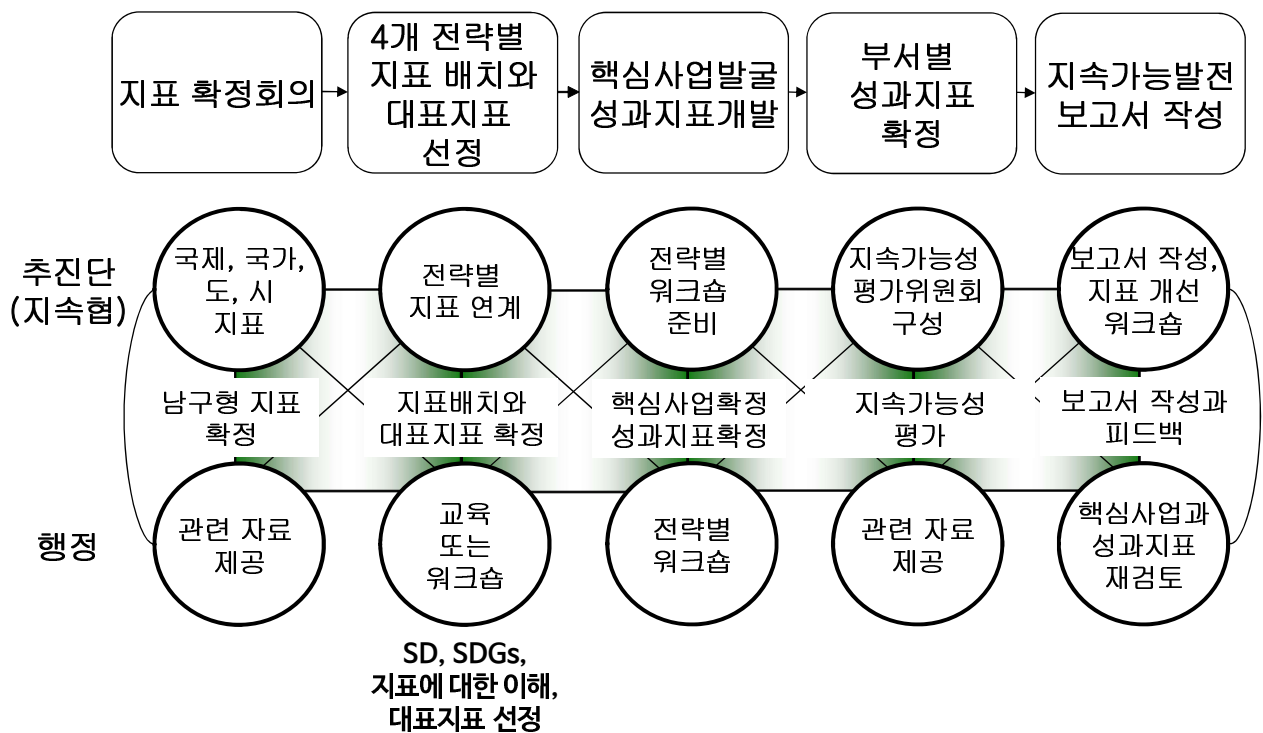
000시 지속가능발전 행정 추진체계(지향)





5. 거버넌스 과제

인천남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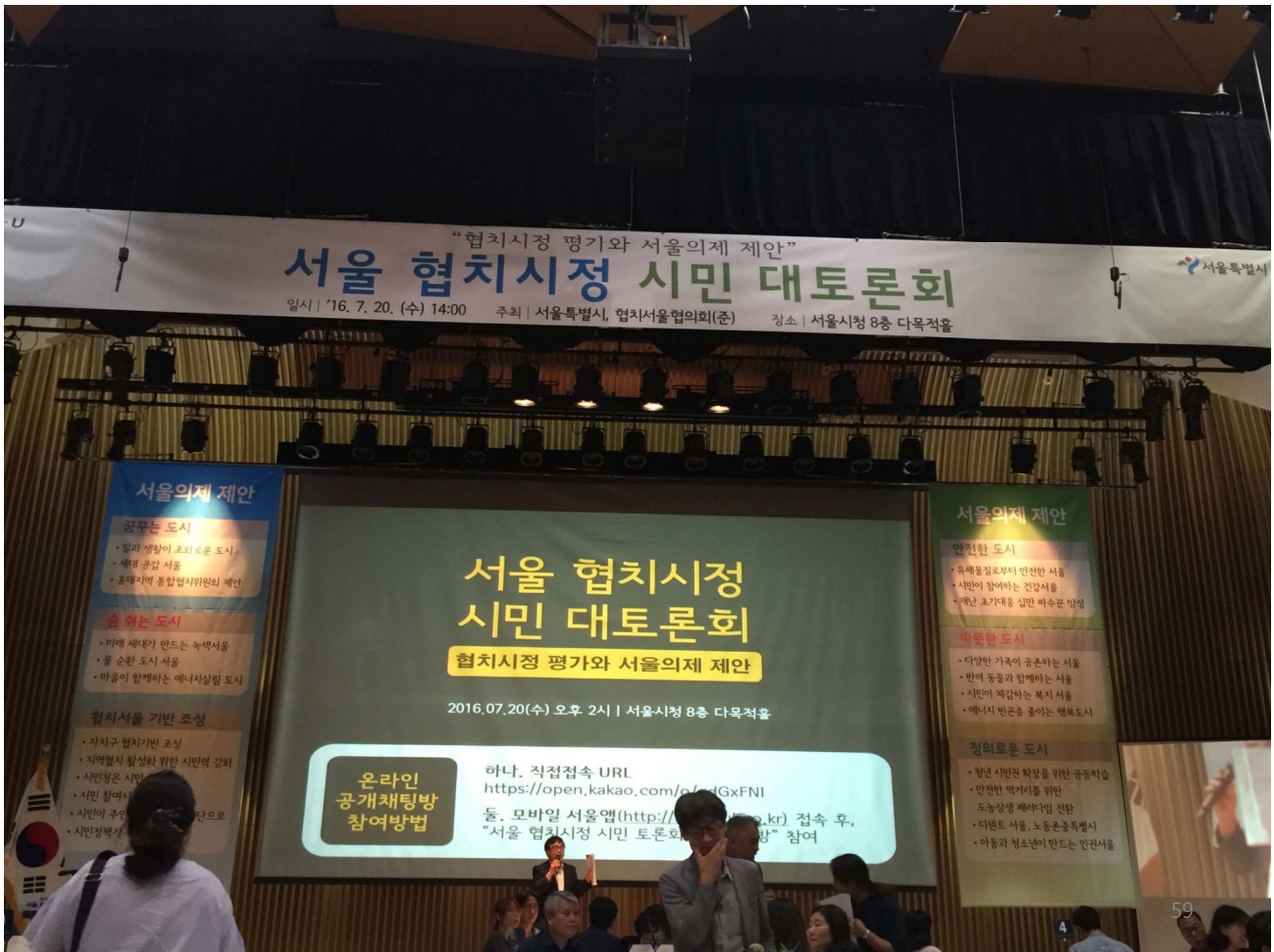
인천 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략	분야	지표(34개)	유엔 SDGs
지혜로운 시민	학습하는 시민		
	건강한 시민		
	즐거는 시민		
지속가능도시	발전도시		
	안전도시		
	환경도시		
사회연대경제	신뢰사회		
	일자리 창출		
	더불어 사는 삶		
i미디어시티	i미디어시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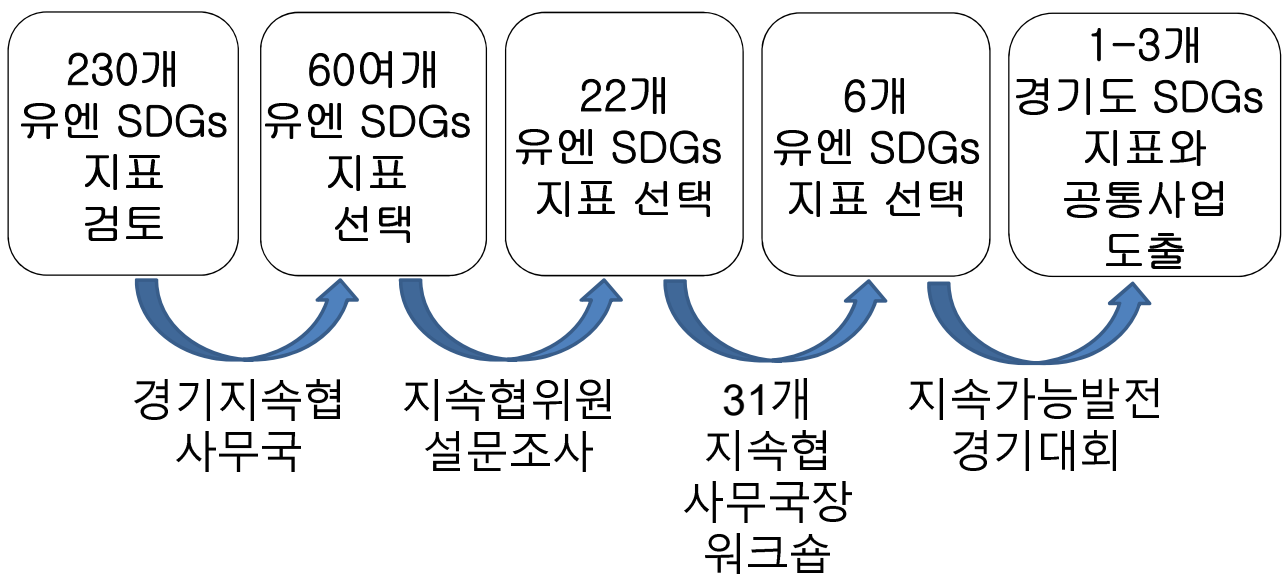
57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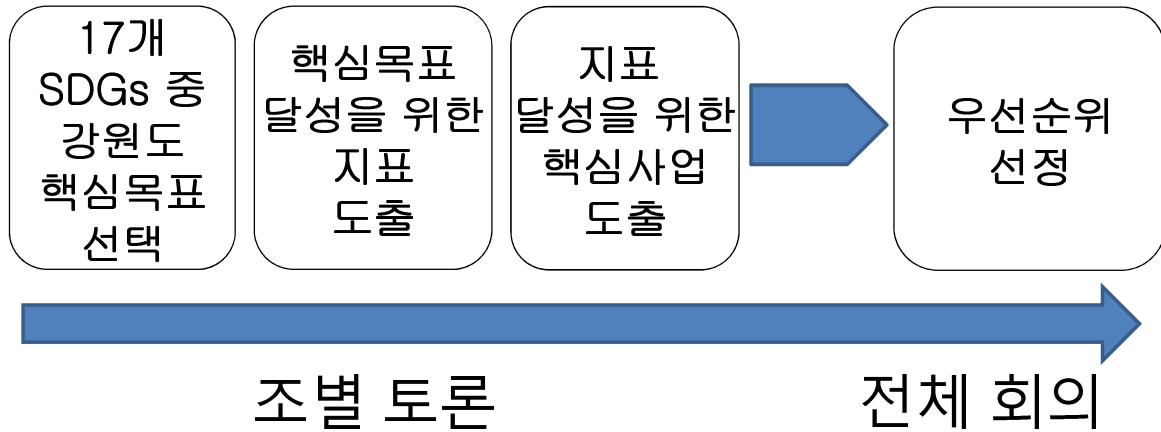
4대전략	10대 분야	번호	SD 지표(34)	Goal	합계	순위
지혜로운 시민 (13)	학습하는 시민 (3)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증가율	4	46	7
		2	1인당 도서대출 권수	4	33	20
		3	공동육아나눔터 수	4	38	12
	건강한 시민 (7)	4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1	38	12
		5	남구 주민의 건강 검진율	3	58	3
		6	5대 질병 발생률	3	31	22
		7	우수지정업소 재인증률	3	13	33
		8	비만자 수	3	21	26
		9	흡연 및 음주 지수	3	45	9
		10	스트레스 인지 지수	3	43	10
	즐거는 시민 (3)	11	지역문화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비율	4	21	26
		12	문화체육 행사 수 및 참여관람 증가율	4	32	21
		13	마을카페, 문화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수	11	36	16
지속가능 도시 (9)	발전도시 (2)	14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16	27	24
		15	재정의존도 지수	17	42	11
	안전도시 (2)	16	보행자를 위한 보도율	11	23	25
		1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1	46	7
	환경도시	18	가구장 에너지 소비량	7	20	28
		19	오존농도 환경기준 초과횟수	11	18	58 29
		20	1이다 노지 면 도시공원 면적	11	58	3



지속가능발전 경기대회 공통 사업 도출: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실천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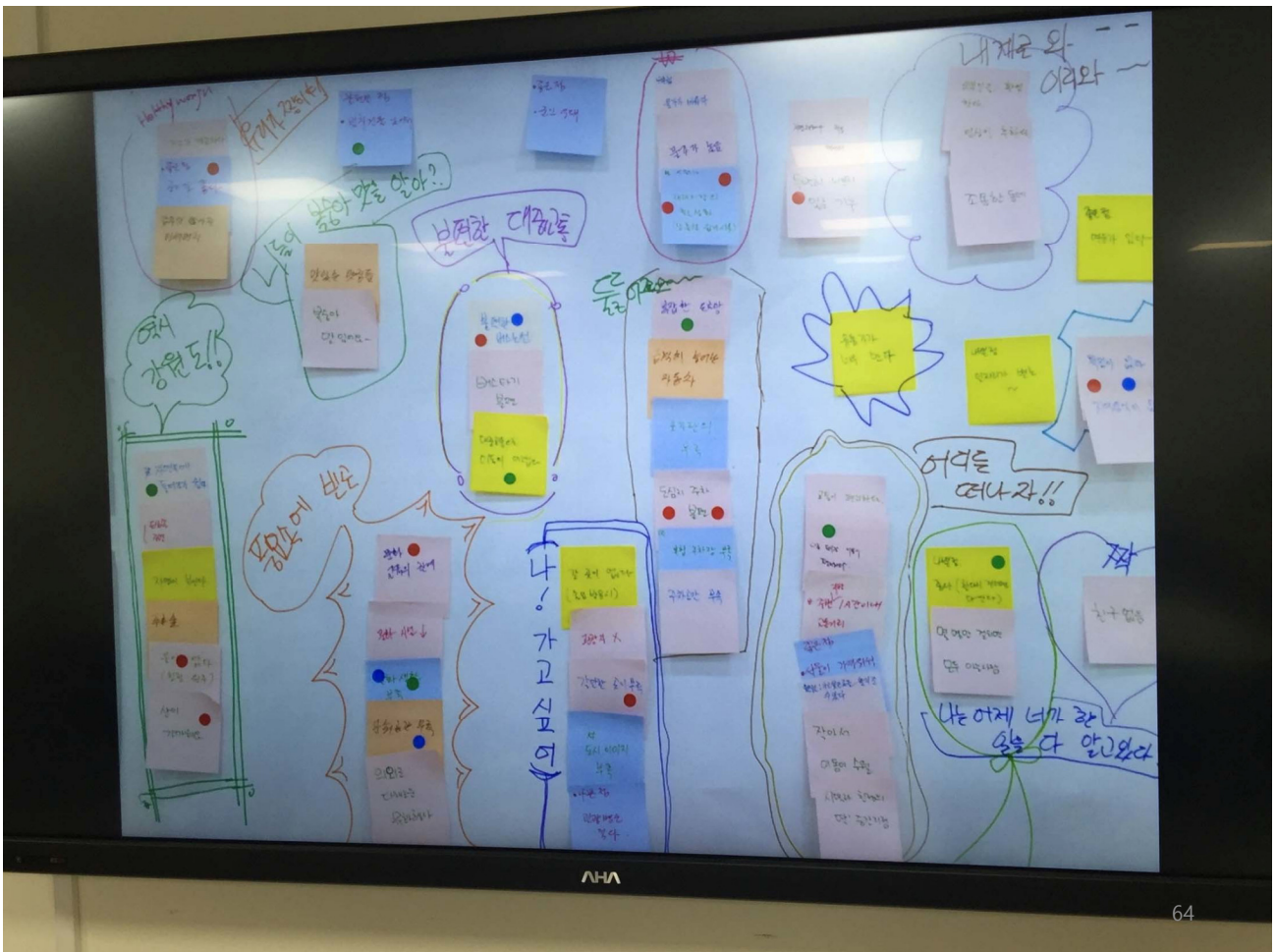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도출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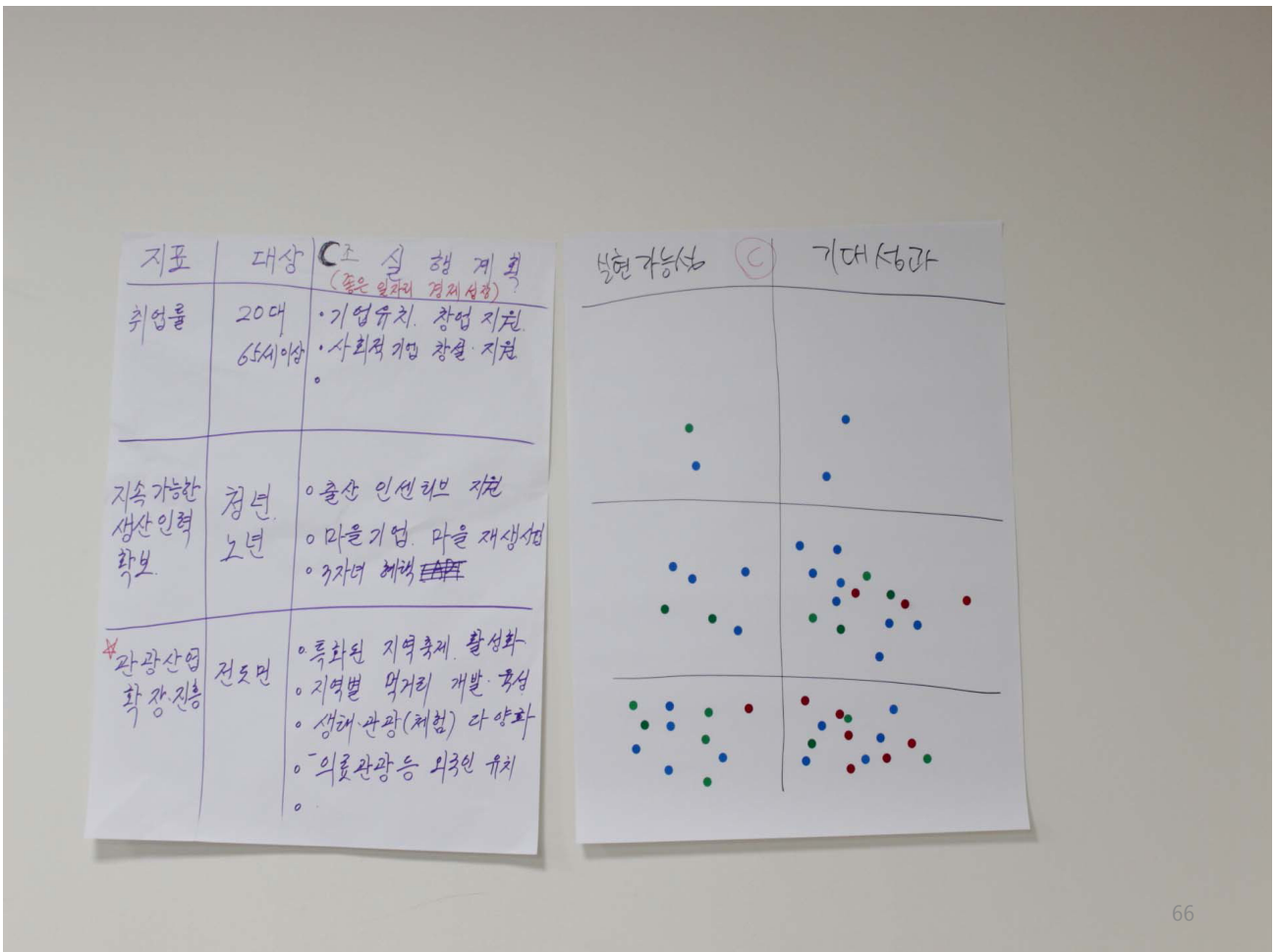
SDGs	과제분야
1 빈곤종식	
2 기아해결	
3 건강과 복지	● ● ● ● ● ● ●
4 양질의 교육	● ●
5 성평등	●
6 깨끗한 물과 위생	● ●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해소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12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 ●
13 기후변화 대응	● ● ● ● ●
14 해양생태계	
15 육상생태계	●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
17 글로벌 파트너십	

62





65



66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감사합니다!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회장 및 시·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